

EU 9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EU 농산물 수출 지속적인 증가

*출처: 유럽위원회 (2018.09.25.)

https://ec.europa.eu/info/news/eu-agri-food-exports-continue-perform-well-2018-sep-25_en

- 유럽위원회 월간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농산물 수출액은 115억 유로, 수입액은 93억 유로임
- 2017년 7월에 비해 수출액은 2% 증가, 수입액은 0.6% 감소함. EU 농산물 무역규모는 22억 유로 흑자로 증가함
- EU 농산물 수출 증가액은 리비아가 5천 4백만 유로로 가장 높으며 싱가포르 4천 5백만 유로, 일본 4천 1백만임
- EU 와인과 주류 부문의 수출액은 각각 8천 2백만 유로와 4천 8백만 유로로 증가, 밀과 기타 곡물 부문 또한 4천 9백만 유로와 4천 7백만 유로로 증가함
- 이와 대조적으로 가축 부문의 수출액은 9천 8백만 유로로 가장 많이 감소, 채소 및 분유도 각각 4천 5백만 유로와 4천 3백만 유로로 감소함
- EU내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억 8천 3백만 유로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 가나와 칠레로부터의 수입액도 각각 4천 6백만 유로와 3천 7백만 유로 상승함
- 분야별로는 콩 5천7백만 유로, 코코아씨 5천 6백만 유로로 크게 증가한 반면 식물성 기름과 팜유는 감소함

2. 펜피코사이드 승인 및 관련 부속서 개정

*출처: EUR-Lex (2018.09.21.)

http://data.europa.eu/eli/reg_impl/2018/1265/oj

- 식물 보호제품(살충제, 생장조절물질 등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)에 관한 규정 ‘Regulation(EC) No 1107/2009’ 에 따라 펜피코사이드(fenpicoxamid)의 승인을 갱신하고 Regulation(EU) No 540/2011의 부속서를 개정함
- Regulation(EU) No 540/2011 부속서에 활성물질로서 펜피코사이드가 포함됨,

Regulation(EC) No 1107/2009의 13조 2항에 따라 특정 조건 및 제한을 포함해 부속서를 개정함

- 부속서 I에 명시된 활성물질 펜피코사이드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승인함
- Regulation(EC) No 1107/2009의 29조 6항에 언급된 원칙이행을 위해 펜피코사이드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, 특히 부속서 I 및 II를 고려해야함
- 회원국은 취급에 있어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함
 - 소비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영향
 - 수생 생물에 대한 위해성
-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확인 정보를 회원국과 권한 기관에 제출해야 함
 - 상업적으로 생산 및 제조된 활성물질의 기술 명세 및 승인된 유독성 규격 준수
 - 물 또는 지하수가 식수로 추출될 때 표면 및 지하수에 존재하는 잔류물의 성질에 대한 수처리 공정효과 확인
 - 갑상선 기능 및 경로에 관한 펜피코사이드의 내분비 교란 가능성
- 신청자는 위원회가 공개한 지표수 및 지하수에 존재하는 잔류물의 성질에 대한 수처리 공정 효과 및 평가 지침 문서를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함

활성물질명 고유번호	IUPAC 명	순도(Purity)	승인일	만료일
Fenpicoxamid CAS No: 517875-34-2 CIPAC No: 991	(3S,6S,7R,8R)-8-benzyl-3-[[i]sobutyryloxy)methoxy]-4-methoxy-pyridine-2-carboxamido}-6-methyl-4,9-dioxo-1,5-dioxonan-7-yl isobutyrate	≥ 750 g/kg	2018년 10월11 일	2028년 10월11 일

3. 양파 기름 승인 및 관련 부속서 개정

*출처: EUR-Lex (2018. 09.27.)

http://data.europa.eu/eli/reg_impl/2018/1295/oj

- 식물 보호제품과 시장 출시와 관한 Regulation(EC) No 1107/2009에 따라 양파 기름 승인을 갱신하고 Regulation(EU) No 540/2011의 부속서를 개정함
- Regulation(EU) No 540/2011 부속서에 기본 물질로서 양파 기름이 포함됨. Regulation(EC) No 1107/2009의 13조 4항에 따라 특정 조건 및 제한을 포함해 부록 개정함

- 부속서 I에 명시된 기본 물질 양과 기름은 그 부속서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승인함
- 시행 규칙 (EU) No 540/2011은 이 규정 부속서II에 따라 개정함
- 양과 기름 수출에 있어 양과 기름에 대한 보고서 (SANTE/10615/2018)의 결과, 특히 부속서 I 및 II를 고려해야함

활성물질명 고유번호	IUPAC 명	순도(Purity)	승인일
Onion oil CAS No: 8002-72-0	Not applicable	Food grade	2018년 10월17일

4. 시페노트린 활성물질로 승인

*출처:EUR-Lex (2018.09.28.)

<http://data.europa.eu/eli/reg/2018/1472/oj>

- 살생물제(biocidal products) product-type 18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물질로서 시페노트린(Cyphenothrin)을 승인함
- Directive 98 / 8 / EC 부속서 V에 따라 시페노트린은 진드기 및 곤충 방제하는 살충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됨
- 시페노트린은 관련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사양 및 조건에 따라 살생물제 product-type 18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 물질로 승인되며 위해성을 고려,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함
 - 관련 전문가가 취급해야 함
 - 지표수, 침전물, 지하수 등 실내 표면 처리를 따름
 - 표면 처리 시 지렁이와 물고기 등을 먹는 포유동물의 2차 중독 여부
 - 식품 및 사료 등에 잔류 가능 제품의 경우, (EC) No 470/2009에 따라 기존의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해야 함
- 이 규정은 유럽연합관보에 공표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함

활성물질명 고유번호	IUPAC 명	순도 (Purity)	승인일	만료일	제품 타입
Cyphenothrin	IUPAC Name: (RS)-α-cyano-3-phenoxybenzyl (1RS,3RS;1RS,3SR)-2,2-dimethyl -3-(2-methylprop-1-enyl)cyclopr oanecarboxylate EC No: 254-484-5 CAS No: 39515-40-7	92 % w/w (total isomer s)	2020년 2월1일	2030 년 1월31 일	18

5. 신규식품 락티톨(Lactitol)에 관한 규정 개정

*출처:EUR-Lex (2018.07.23.)

http://data.europa.eu/eli/reg_impl/2018/1293/oj

- 신규식품 락티톨(Lactitol)은 Regulation(EC) No 258/97의 제 5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 보충제의 캡슐 및 알약 형태로 판매가 승인됨
- 2018년 3월 22일 덴마크의 화학약품 업체 DuPont Nutrition Biosciences ApS는 (EU) 2015/2283의 조항10의 신규식품 락티톨의 사용 조건을 변경 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함
 - 식품 보조제에 사용되는 락티톨의 분말 형태 허용 요청
- 유럽 위원회는 식품 첨가물에 사용되는 락티톨의 승인된 형태로 분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용 조건을 개정
- 락티톨의 최대 허용치는 Regulation EU (European Decision) 2017/450에 의해 승인됨, 캡슐 및 알약으로 식품보충제에 사용되는 신규식품으로써 20g/1일 임
- 분말 형태의 락티톨의 제안된 사용 수준은 최대 수준에 해당됨
- 락티톨 분말 형태 사용을 승인하기 위해 락티톨 분말 사용 조건 수정하는 것이 필요
- Regulation (EU) 2015/2283의 제 5조에 따라 락티톨 분말 사용 조건이 신고되어 Regulation(EU) 2017/2470에 포함, 부속서에 따라 수정됨
- 이 규정은 유럽연합관보에 공표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함

승인된 신규식품	식품 카테고리	허용치	라벨링 요구사항
락티톨(Lactitol)	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(캡슐, 정제 또는 분말)에 정의 된 식품 보충제	20g/1일	신규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"락티톨Lactitol" 이어야 함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- 없음

III**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**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7.1.1						

※ 첨부파일 참조